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의 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(2019, 12, 9,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 19-150

2019. 12. 9. 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출경위

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도시안전과)

나. 제 출 일 : 2019. 11. 15.

다. 회 부 일 : 2019. 11. 18.

2. 제출이유

본 조례의 입안기준 및 상위법령과 중복 및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과의 중복으로 불필요한 규정 삭제(안 제4조제3호)
- 나. 주민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입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 (안 제8조제2항)
- 다.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의 반환규정 신설(안 제23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2)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(필요없음)

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19. 10. 4.~ 10. 25.(의견 없음)

2) 행정규제 사전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내용과 상위 법령과의 중복성 및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중 전광류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신고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삭제(안 제4조제3호)
- 주민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규정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수정(안 제8조제2항)
-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의 반환 규정 신설(안 제23조제2항)

다. 종합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의 안 제4조제3호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전광류를 사용하 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,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음에도 중복하여 불필요한 조문이었으 며, 허가・신고 대상 광고물이 아님에도 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조항으 로 삭제하는 것이고,

- 안 제8조제2항의 주민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규정이 위원중 호 선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 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여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잘못 운영된 사항을 수정하는 것임.
- 안 제23조제2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그동안 소극행정으로 주민불편 및 권익을 침해하고 민 법상 부당이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인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 하는 것으로서 위법사항을 바로잡는 사항임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그 동안 소극행정으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했던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.

[관계법령]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시행령」

제9조 (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)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[개정 2016.7.6]

- 1. 광고물등의 규격
- 2. 사용자재
- 3. 광고내용
- 4. 표시 위치 또는 장소(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
제27조 (주민협의회의 운영)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 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·운영 하여야 한다.

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
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